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며



최영훈
서울 제4중재부 조사관

한 종합편성채널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영광굴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영광굴비 판매 상인들 180명이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들 각자에게 2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을 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진짜 영광굴비는 아가미를 통해 살 속으로 소금을 넣은 후 3개월 정도의 해풍 건조를 해야 만들어지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굴비는 소금을 대충 쳐서 냉동하여 하루 만에 완성되기 때문에 굴비라기보다는 냉동 간조기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에서 굴비 가공·판매를 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소비자들이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게 되고 냉동기술의 발달에 따라 굴비를 오래 말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제조법이 변한 것이며, 소비자들의 저염식 선호에 따라 아가미에 일일이 소금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냉동 간조기를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굴비 업체가 1,000여 곳이 넘는데 정확히 조사한 뒤 방송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 전에 인터넷에 게시된 다시보기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했다.

조정심리에서 피신청인측은 인터넷에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영업의 막대한 손해 때문에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손해배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필자도 그 동안 굴비라고 하면 조기를 일정기간 말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 동안 속았다고도 생각할 것이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굴비들이 모두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생각할까? 신청인의 주장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개념도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것. 더구나 일부 아주 고가의 굴비는 일정기간 건조해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면 신청인도 억울할 수 있겠다 싶었다.

조정안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담당 중재부는 법원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라고 제안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에 동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후 신청인은 조정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이다.

판례에 따르면 보도금지 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법익침해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침해의 가능성이 아주 크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방송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보기 방송을 금지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실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참조하되 그 결정이 어땠든 우리 위원회는 언론분쟁 담당 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조정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다년간의 법조 경험, 30년 이상의 언론현장 경험, 60년 이상의 인생 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온 중재위원들이 이번에는 또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게 될지 기대된다.